

## 비전자여권(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 국가별 인정 현황('23.1.17.기준)

		제한적 인정 주요 내용	출국 또는 경유시만 인정, 한국 귀국시에만 인정, 잔여 유효기간 또는 사증 필요, 한국 국적자만 인정 등	
연번	국가명	구분	인정 여부	비고(제한사항 등)
1	가나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효한 사증 소지 필수</li> <li>○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li> <li>○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카드 필수</li> </ul>
		여행증명서	불인정	
2	가봉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3	가이아나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4	감비아	긴급여권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여행증명서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5	과테말라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6	그레나다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한국 귀국시에만 인정 * 가급적 전자여권 소지 바람직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한국 귀국시에만 인정 * 가급적 전자여권 소지 바람직
7	그리스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8	기니	긴급여권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여행증명서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9	기니비사우	긴급여권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여행증명서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10	나미비아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입국 불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입국 불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11	나우루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입국 불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입국 불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12	나이지리아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입국 불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오직 한국인이 한국 복귀를 위해서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입국 불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오직 한국인이 한국 복귀를 위해서만 인정
13	남수단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14	남아프리카공화국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출국시점 기준으로 잔여 유효기간 30일 이상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출국시점 기준으로 잔여 유효기간 30일 이상 필요 / 한국 귀국 목적으로 출국시 유효기간 무관
15	네덜란드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한국 귀국의 목적으로 베네룩스 3국을 경유 또는 출국하는 경우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한국 귀국의 목적으로 베네룩스 3국을 출국하는 경우
16	네팔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17	노르웨이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출국 예상일을 기준으로 여권의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출국 예상일을 기준으로 여권의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필요
18	뉴질랜드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유효기간이 체류예정기간 +3개월 이상의 경우 허용. 뉴질랜드 입국시에는 NZeTA 필수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유효기간이 체류예정기간 +3개월 이상의 경우 허용. 뉴질랜드 입국시에는 NZeTA 필수
19	니제르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20	니카라과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21	덴마크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덴마크 입국시 행권국가로부터 출국 예정일 기준 최소 3개월 이상 유효 여권 소지해야 덴마크 입국 가능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본국(한국)으로 돌아갈 목적으로 사용시 인정
22	도미니카공화국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23	도미니카연방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24	독일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출국 예상일을 기준으로 여권의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출국 예상일을 기준으로 여권의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필요
25	동티모르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인 한국 복귀만 인정</li> <li>○ 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시만 인정</li> </ul>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인 한국 복귀만 인정</li> <li>○ 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시만 인정</li> </ul>
26	라오스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라오스 입국시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출국시 유효기간 무관)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한국 복귀를 위한 사용만 인정
27	라이베리아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입국 불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오직 한국인이 한국 복귀를 위해서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입국 불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오직 한국인이 한국 복귀를 위해서만 인정
28	라트비아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li> <li>○ 오직 한국인이 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시만 인정</li> </ul>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li> <li>○ 오직 한국인이 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시만 인정</li> </ul>
29	러시아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30	레바논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31	레소토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32	루마니아	긴급여권	불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인정하나 출입국시 심사절차가 까다로움. 한국 입국을 위한 출국 또는 경유시에만 사용 필요
33	룩셈부르크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한국 귀국 목적으로 베네룩스 3국을 경유 또는 출국하는 경우에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한국 귀국 목적으로 베네룩스 3국을 출국하는 경우에만 인정
34	르와ندا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출국시만 인정

연번	국가명	구분	인정 여부	비고(제한사항 등)
		여행증명서	인정	
35	리비아	긴급여권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여행증명서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36	리투아니아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37	리히텐슈타인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필요
38	마다가스카르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39	마셜제도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40	마이크로네시아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41	말라위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이 필요하며, 미만인 경우 입국이 거절될 수 있음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시만 인정
42	말레이시아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 말레이시아 출국시(본국 귀국이 아닌 경우 출국이 제한될 수 있음) ○ 말레이시아가 아닌 다른 국가를 목적으로 단순 경유시 ○ 입국시 불인정 원칙(단, 말레이시아에 유효한 장기 사증을 소지하고 거주중인 경우 출발국 소재 말레이시아 대사관과 상담후 제한적으로 인정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 말레이시아 출국시(본국 귀국이 아닌 경우 출국이 제한될 수 있음) ○ 말레이시아가 아닌 다른 국가를 목적으로 단순 경유시 ○ 입국시 불인정 원칙(단, 말레이시아에 유효한 장기 사증을 소지하고 거주중인 경우 출발국 소재 말레이시아 대사관과 상담후 제한적으로 인정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43	말리	긴급여권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여행증명서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44	멕시코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45	모나코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입국시점 기준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체류예정기간 + 3개월 이상'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입국시점 기준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체류예정기간 + 3개월 이상' 필요
46	모로코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 1회 한해 사용 가능 ○ 모로코 체류증 소지자의 경우 모로코 입국시 최대 30일간 체류 가능 (이후, 대사관에 방문해 여권 발급 요) ○ 여권을 분실하여 긴급여권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출국시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여권분실 확인서를 제시해야 함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 1회 한해 사용 가능 ○ 모로코 체류증 소지자의 경우 모로코 입국시 최대 30일간 체류 가능 (이후, 대사관에 방문해 여권 발급 요) ○ 여권을 분실하여 긴급여권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출국시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여권분실 확인서를 제시해야 함. ○ 공하을 통해 모로코의 사전 승인 필요
47	모리셔스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 모리셔스 정부는 발급된 여행증명서 정보를 모리셔스 외교부로 사전 통보 요청
48	모리타니아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 1회 한해 사용 가능 ○ 모로코 체류증 소지자의 경우 모로코 입국시 최대 30일간 체류 가능 (이후, 대사관에 방문해 여권 발급 요) ○ 여권을 분실하여 긴급여권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출국시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여권분실 확인서를 제시해야 함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 1회 한해 사용 가능 ○ 모로코 체류증 소지자의 경우 모로코 입국시 최대 30일간 체류 가능 (이후, 대사관에 방문해 여권 발급 요) ○ 여권을 분실하여 긴급여권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출국시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여권분실 확인서를 제시해야 함. ○ 공하을 통해 모리타니아의 사전 승인 필요
49	모잠비크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 모잠비크 정부에서 발급한 유효한 사증 필요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 모잠비크 정부에서 발급한 유효한 사증 필요
50	몬테네그로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 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 및 경유시만 인정
51	몰도바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출국만 가능
52	몰디브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53	몰타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 출국(최종 도착지 대한민국 표기)만 제한적 허용(여권분실신고서 반드시 지참) ○ 입국은 불가능
54	몽골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 몽골에서 출국만 인정, 몽골 입국은 원칙적 불인정(몽골 외교부 사전승인 필요)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 몽골에서 출국만 인정, 몽골 입국은 불인정
55	미국	긴급여권	인정	비자면제프로그램(WVP)에 의거한 전자적 여행허가(ESTA) 신청 불가 ※ ESTA는 전자여권만 가능
		여행증명서	인정	비자면제프로그램(WVP)에 의거한 전자적 여행허가(ESTA) 신청 불가 ※ ESTA는 전자여권만 가능
56	미얀마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 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만 인정 ○ 한국 복귀를 위한 항공편 이용시 직항편만 이용 가능
57	바누아투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58	바레인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59	바베이도스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한국 귀국시에만 인정 * 가급적 전자여권 소지 바람직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한국 귀국시에만 인정 * 가급적 전자여권 소지 바람직
60	바하마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61	방콕라데시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 출국시에만 제한적으로 인정 ○ 6개월이상 유효기간 필요

연번	국가명	구분	인정 여부	비고(제한사항 등)
61	영국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 출국시에만 제한적으로 인정
		간급여권	제한적 인정	○ 6개월이상 유효기간 필요 ○ 유효한 사증 소지 필수
62	베냉	여행증명서	불인정	
		간급여권	인정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카드 필수
63	베네수엘라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경찰 발행 분실증명서 소지해야 함
64	베트남	간급여권	제한적 인정	한국인이 귀국을 위한 출국, 제3국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사용 가능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한국인이 귀국을 위한 출국, 제3국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사용 가능
65	벨기에	간급여권	제한적 인정	한국 귀국 목적으로 베네룩스 3국을 경유 또는 출국하는 경우에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한국 귀국 목적으로 베네룩스 3국을 출국하는 경우에만 인정
66	벨라루스	간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 입국은 불가, 출국만 가능(출국 사증 필요) ○ 24시간 이내 경유(공항내 환승) 가능
67	벨리즈	간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68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간급여권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출국예정일 기준 3개월 이상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출국예정일 기준 3개월 이상 필요
69	보츠와나	간급여권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70	볼리비아	간급여권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 유효한 사증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출국만 가능, 입국은 불가능
71	부룬디	간급여권	제한적 인정	출국시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72	부르키나파소	간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73	부탄	간급여권	불인정	
		여행증명서	불인정	
74	북마케도니아	간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불인정	
		간급여권	인정	
75	불가리아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 출국시만 인정 ○ 여행증명서 보다는 여권사용 권장
76	브라질	간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출국 또는 경유시만 인정
77	브루나이	간급여권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출국만 가능
78	사모아	간급여권	제한적 인정	여권 유효기간이 체류예정기간 +6개월 이상의 경우 허용
		여행증명서	불인정	
79	사우디아라비아	간급여권	제한적 인정	○ 출국은 가능(다만, 사우디 정부는 간급여권에 사우디 재입국을 위한 리엔트리 비자를 발급하지 않음) / 사우디 주재 우리 국민이 사우디에 재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 비자 발급 필요) ○ 입국시 입국 사증 필요(비자발급을 위해서는 6개월 이상 유효기간 잔여 필요) ○ 출국은 가능 ○ 입국 불가(주한사우디대사관은 여행증명서 대상 비자를 발급하지 않음)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 입국 불가(주한사우디대사관은 여행증명서 대상 비자를 발급하지 않음)
80	사이프러스	간급여권	제한적 인정	오직 한국인이 한국 복귀를 위해서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오직 한국인이 한국 복귀를 위해서만 인정
81	산마리노	간급여권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이탈리아에서 출입국시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출입 가능
		여행증명서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이탈리아에서 출입국시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출입 가능
82	상투메프린시페	간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83	세네갈	간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84	세르비아	간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시만 인정
85	세이셸	간급여권	제한적 인정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 한국 또는 장기 체류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시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 한국 또는 장기 체류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시 인정
86	세인트루시아	간급여권	인정	* 가급적 전자여권 소지 바람직
		여행증명서	인정	* 가급적 전자여권 소지 바람직
87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간급여권	제한적 인정	경유 또는 출장 목적 입출국시에만 인정 / 단, 이민국에 사전 통보 필요 * 가급적 전자여권 소지 바람직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경유 또는 출장 목적 입출국시에만 인정 / 단, 이민국에 사전 통보 필요 * 가급적 전자여권 소지 바람직
88	세인트키츠네비스	간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89	소말리아	간급여권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여행증명서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90	솔로몬제도	간급여권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91	수단	간급여권	제한적 인정	○ 출국 허용 ○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고 유효한 입국비자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 입국 허용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92	수리남	간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93	스리랑카	간급여권	제한적 인정	○ 비자 신청시 잔여 유효기간 1년 이상 필요 ○ 한국 복귀를 위해서만 인정 ○ 출국 및 경유 시 인정함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 비자 신청시 잔여 유효기간 1년 이상 필요 ○ 한국 복귀를 위해서만 인정 ○ 출국 및 경유 시 인정함
94	스웨덴	간급여권	인정	EU 기준에 따라 동일 적용
		여행증명서	인정	EU 기준에 따라 동일 적용

연번	국가명	구분	인정 여부	비고(제한사항 등)
95	스위스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필요
96	스페인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97	슬로바키아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한국인의 한국 복귀를 위한 경우 및 출국의 경우만 인정
98	슬로베니아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99	시에라리온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입국 불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오직 한국인이 한국 복귀를 위해서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입국 불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오직 한국인이 한국 복귀를 위해서만 인정
100	싱가포르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101	아랍에미리트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 출국 또는 경유시만 인정 ※ 전자여권 발급 후에도 여권 분실 시 복잡한 신고절차가 요구되는 바, UAE의 엄격한 태도를 고려하여 최대한 전자여권 소지 권고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 출국 또는 경유시만 인정 ※ 전자여권 발급 후에도 여권 분실 시 복잡한 신고절차가 요구되는 바, UAE의 엄격한 태도를 고려하여 최대한 전자여권 소지 권고
102	아르메니아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03	아르헨티나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입국시 유효한 사증(비자) 필요
		여행증명서	인정 여부 최신 대기중	
104	아이슬란드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출국 예상일을 기준으로 여권의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필요
		여행증명서	불인정	
105	아이티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06	아일랜드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입국 목적 등 제반사항을 감안 출입국 담당관이 선별적으로 입국 허용(아일랜드에서의 합법적 거주자는 입국 가능)
107	아제르바이잔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입국시 잔여 유효기간 4개월 이상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입국시 잔여 유효기간 4개월 이상 필요 한국 국적자가 아닌 경우 e-visa 발급 불가(아제르바이잔대사관을 통해 사전에 비자를 발급받은 후 입국)
108	아프가니스탄	긴급여권	파악불가	아프가니스탄은 여행금지국가임.
		여행증명서	파악불가	아프가니스탄은 여행금지국가임.
109	안도라	긴급여권	인정	스페인 또는 프랑스(모두 행정협약국)를 통해서 입국이 가능하므로, 동 인접국의 출입국 정책 우선 적용
		여행증명서	인정	스페인 또는 프랑스(모두 행정협약국)를 통해서 입국이 가능하므로, 동 인접국의 출입국 정책 우선 적용
110	알바니아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필요
111	알제리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 알제리 입국 시 유효한 비자 필요 ○ 한국 및 체류지 복귀를 위한 출국 및 경유 시 모두 인정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 알제리 입국 시 불인정 ○ 한국 및 체류지 복귀를 위한 출국 및 경유 시 모두 인정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112	앙골라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113	앤티가바부다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14	에리트레아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115	에스와티니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16	에스토니아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 에스토니아 출국 기준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 에스토니아 출국 기준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필요 ○ 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시만 인정
117	에콰도르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이어야 입국 가능 ○ 여권 분실 후 출국시,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에콰도르 경찰 발행 여권분실확인서, 비자소지자는 거주 외국인관리국 발행 비자소지증명서 제출 필수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여권 분실 후 출국시,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에콰도르 경찰 발행 여권분실확인서, 비자소지자는 거주 외국인관리국 발행 비자소지증명서 제출 필수
118	에티오피아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 한국 또는 장기 체류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시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 한국 또는 장기 체류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시 인정
119	엘살바도르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120	영국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21	예멘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22	오만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출국 또는 경유 시만 인정(오만 경찰 발급 여권분실신고서 필요)
		여행증명서	불인정	
123	오스트리아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24	온두라스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25	요르단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긴급 상황 하 출국시에만 인정
126	우간다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 잔여유효기간 불분 ○ 오직 한국인이 한국 귀국을 위해 출국시만 인정(경유시 인정 안함) ○ 심사절차 일반여권과 동일

연번	국가명	구분	인정 여부	비고(제한사항 등)
127	우루과이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 잔여유효기간 불문 ○ 한국인이 한국 귀국을 위해 출국시 인정(경유시 인정 안함) ○ 여행증명서로 우루과이 입국시 사증 필요 ○ 심사절차 일반여권과 동일
128	우즈베키스탄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29	우크라이나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출국만 가능
130	이라크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31	이란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 이란 출국만 가능, 이란 입국 불가 - 단, ①기존 입국시 사용한 여권이 변경되었다는 사실과 사유가 기재된 주이란대한민국대사관 공한을 이란 외교부에 제출하고, ②이란 외교부에서 수령한 문서를 이란 경찰서에 제출한 후 출국 가능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 이란 출국만 가능, 이란 입국 불가 - 단, ①기존 입국시 사용한 여권이 변경되었다는 사실과 사유가 기재된 주이란대한민국대사관 공한을 이란 외교부에 제출하고, ②이란 외교부에서 수령한 문서를 이란 경찰서에 제출한 후 출국 가능
132	이스라엘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 유효한 비자 소지자 한정
133	이집트	긴급여권	불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이집트에서 출국시만 인정
134	이탈리아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35	인도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여권 분실에 따라 발급 시 인도 내무부 산하 외국인등록소 (FRRO)에서 출국허가 (EXIT PERMIT)를 받아야 출국 가능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여권 분실에 따라 발급 시 인도 내무부 산하 외국인등록소 (FRRO)에서 출국허가 (EXIT PERMIT)를 받아야 출국 가능
136	인도네시아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입국불가 ○오직 한국인이 한국 복귀를 위해서만 인정 (인도네시아 이민국에서 입국 사실 확인 절차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입국불가 ○오직 한국인이 한국 복귀를 위해서만 인정 (인도네시아 이민국에서 입국 사실 확인 절차 필요)
137	일본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38	자메이카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39	잠비아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이 필요하며, 미만인 경우 입국이 거절될 수 있음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 시만 인정
140	적도기니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41	조지아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42	중국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43	중앙아프리카	긴급여권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여행증명서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144	지부티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 한국 또는 장기 체류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시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 한국 또는 장기 체류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시 인정
145	짐바브웨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이 필요하며, 미만인 경우 입국이 거절될 수 있음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 시만 인정
146	차드	긴급여권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여행증명서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147	체코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출국예정일 기준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출국예정일 기준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필요
148	칠레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본국 귀국을 위한 출국시만 가능
149	카메룬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50	카보베르데	긴급여권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여행증명서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151	카자흐스탄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152	카타르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본국 귀국을 위한 출국 및 경유시(본국 귀국용)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본국 귀국을 위한 출국 및 경유시(본국 귀국용)만 인정
153	캄보디아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 여권 잔여기간이 6개월+체류예정기간 이상 남아 있어야 입국 가능 ○ 캄보디아 내에서 여권 분실한 경우, 여권 재발급후 캄보디아 이민청에서 출국비자를 받아야만 출국 가능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 여권 잔여기간이 6개월+체류예정기간 이상 남아 있어야 입국 가능 ○ 캄보디아 내에서 여권 분실한 경우, 여권 재발급후 캄보디아 이민청에서 출국비자를 받아야만 출국 가능
154	캐나다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55	케냐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56	코모로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57	코스타리카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58	코트디부아르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연번	국가명	구분	인정 여부	비고(제한사항 등)
159	콜롬비아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60	콩고공화국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61	콩고민주공화국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62	쿠웨이트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한국 국적자만 인정
163	룩셈부르크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여권 유효기간이 체류예정기간 +6개월 이상의 경우 허용
		여행증명서	불인정	
164	크로아티아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출국예정일 기준 3개월 이상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 잔여 유효기간 출국예정일 기준 3개월 이상 필요 ○ 입국 전 재외공관에서 사증 취득 필요
165	키르기스스탄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166	키리바시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167	타이베이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 무사증 입국 불가(단, 단순 경우 가능)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 무사증 입국 불가(단, 단순 경우 가능)
168	타지키스탄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69	탄자니아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 여권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필요 ○ 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시에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 여권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필요 ○ 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시에만 인정
170	태국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한국 귀국시에만 인정
171	튀르키예	긴급여권	인정	○ 일반여권과 동일한 조건에서 사용 가능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 출국시에만 사용 가능
172	토고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 유효한 사증 소지 필수 ○ 분실신고서류 소지 필수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 화열병 예방접종 증명카드 필수
		여행증명서	불인정	
173	통가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의 경우 허용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의 경우 허용
174	투르크메니스탄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75	투발루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176	튀니지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177	트리니다드토바고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한국 귀국시에만 인정 * 가급적 전자여권 소지 바람직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한국 귀국시에만 인정 * 가급적 전자여권 소지 바람직
178	파나마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79	파라과이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180	파키스탄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81	파푸아뉴기니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시에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182	팔라우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입국 불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183	페루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84	포르투갈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85	폴란드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86	프랑스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입국시점 기준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체류예정기간 + 3개월 이상'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입국시점 기준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체류예정기간 + 3개월 이상' 필요
187	피지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88	핀란드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 핀란드 출국 기준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필요 ○ 인정하나 출입국시 심사절차가 까다로움 (예) 긴급여권 소지사유 등 심층질의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 핀란드 출국 기준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필요 ○ 왕복여행 가능 시에만 인정
189	필리핀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및 귀국 또는 경유 항공권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입국 불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190	헝가리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출입국 기준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출입국 기준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필요
191	호주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92	홍콩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 일반인 : 잔여 유효기간 90일 이상 필요 ○ 홍콩 거주자(영주권자)는 여권 유효기간 내 입국 가능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 일반인 : 잔여 유효기간 90일 이상 필요 ○ 홍콩 거주자(영주권자)는 여권 유효기간 내 입국 가능
193	마카오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 일반인 : 잔여 유효기간 90일 이상 + 마카오 체류기간 이상 유효기간 필요 ○ 마카오 거주자(블루카드 소지자)는 여권 유효기간 내 입국 가능

연번	국가명	구분	인정 여부	비고(제한사항 등)
173	마카오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인 : 잔여 유효기간 90일 이상 + 마카오 체류기간 이상 유효기간 필요</li> <li>○ 마카오 거주자(블루카드 소지자)는 여권 유효기간 내 입국 가능</li> </ul>